

제 246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공보실장 손왈수

전화 75 - 7834

1972. 6. 19.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시보

차

례

이 영구보존 되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발행하임.
 1972. 3. ...
 서울특별시 시민과장

◎ 규 칙

제 1222 호 서울특별 시보건소직계중개 정규칙..... 3

◎ 사 령..... 4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3-1

0971

규 칙

서울특별시보건소직제중개정규칙을 이
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6월 17일

㉔ 서울특별시규칙제 1222호

서울특별시보건소직제중개정규칙
서울특별시보건소직제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 5 조 내지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
한다.

제 5 조 (기구) ①보건소에 민원봉사실,
위생과, 보건지도과와 방역과를 둔다.
②민원봉사실장과 위생과장은 지방행
정사무관으로 보건지도과장과 방역과
장은 지방의무기과 또는 지방보건기
과로 보한다.

제 6 조 (민원봉사실) ①민원봉사실에
사무계와 민원처리계를 두고 계장은
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
②민원봉사실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
음 각호와 같다.

1. 서 무 계

- 가. 인사에 관한 사항
- 나. 세입, 회계, 용도에 관한 사항
- 다. 보건소 지소의 감독
- 라. 출생, 사망, 질병 기타 보건에
관한 통계
- 마. 당직 및 청중 단속과 소내

보안관리

- 바. 공의임명
- 사. 타과 및 실내 타계 주관에 속
하지 아니하는 사항.

2. 민원처리계

- 가.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
- 나.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
- 다. 각종 증명의 발급
- 라. 관인관수 및 문서통제
- 마. 문서의 수발
- 바. 민원신고 센터 운영

제 7 조 (위생과) ①위생과에 허가계와
지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
또는 지방보건기사로 보한다.

②위생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
와 같다.

1. 허 가 계

- 가. 식품위생업소(접객, 제조, 판매)
허가
- 나. 환경 위생업소 허가
- 다.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. 아니
하는 사항

2. 지 도 계

- 가. 식품 및 환경위생에 대한 지도
단속
- 나. 위생업소 위생 감찰
- 다. 식품중독에 관한 사항
- 라. 부정, 불량식품단속
- 마.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

제 8 조 (보건지도과) ①보건지도과에 보
건사업계와 의약계를 두고 보건사업계
장은 지방간호기사 또는 지방보건기사

로, 의약계장은 지방약무기사, 지방보건의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

②보건지도과의 특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보건사업계

- 가. 보건에 관한 계몽교육 선전
- 나. 사업장 종업원의 건강관리 및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
- 다. 특수 지방병 연구
- 라. 임산부의등록 및 유아의 건강관리
- 마. 가족계획에 관한 계몽 선전 지도
- 바.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연구
- 사. 구 강 위 생
- 아. 학교 보건에 관한 사항
- 자.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의 약 계

- 가.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조산원 기타 의료업의 개설허가와 휴, 폐업에 관한 지도단속
- 나. 약업에 대한 개설등록 및 휴, 폐업에 대한 지도 단속
- 다. 약종상, 대약, 청대상 허가
- 라. 마약사범단속 및 의료업자 마약 구입지도
- 마. 기타 의료업에 관한 사항

제 9 조 (방역과) ①방역과에 방역계와 환경계를 두고 방역계장은 지방보건기사로 환경계장은 지방보건기사 또

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

②방역과의 특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방 역 계

- 가. 만성 전염병환자의 진찰과 예방
- 나. 엑스선 촬영 및 표시
- 다. 각종 병리 시험검사
- 라. 관내 공의의 업무지도
- 마. 급성 전염병 예방
- 바. 방역작업실시
- 사. 역학조사
- 아. 기타 방역에 관한 사항
- 자.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환 경 계

- 가. 공해 (소음, 매연, 진동, 분진, 악취, 공장폐수, 사업장폐수)에 관한 지도 및 단속
- 나. 공해업소에 대한 조치
- 다. 공해에 관한 제반자료의 파악 분석
- 라. 방사선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
- 마. 공해에 관한 시험분석 의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사 령

◎ 1972. 6. 16

성북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최일범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